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410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정혜경 · 민병덕 · 한창민  
최혁진 · 전종덕 · 손 술  
용혜인 · 허성무 · 윤종오  
김 윤 의원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세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여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되, 기준 소득 미달자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는 보수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

호받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도록 개편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적용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노무 제공자,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자 등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다.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라.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가 보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모두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 일자리 종사자의 수급권을 강화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4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6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을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으로, “근로자”를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4.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정한다)

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를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로,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를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로, “평균임금으로”를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 보수총액· 월 보수액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적용 제외) ① -----<br>-----<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해당 사업에서 <u>소정(所定)근로시간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시간</u> 미만인 <u>근로자</u>                                               | 2. ----- <u>보수</u> 가-----<br>----- <u>소득</u><br><u>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u> ----- <u>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u>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② <u>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u>                                                                                                     |
| <u>&lt;신    설&gt;</u>                                                                                           | 1. <u>일용근로자</u>                                                                                                                                       |
| <u>&lt;신    설&gt;</u>                                                                                           | 2. <u>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u>                                                                                                                              |

|                                                                |                                                                                                                                                 |
|----------------------------------------------------------------|-------------------------------------------------------------------------------------------------------------------------------------------------|
| <p><u>&lt;신 설&gt;</u></p>                                      | <p><u>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u></p>                                                                                                                 |
| <p><u>&lt;신 설&gt;</u></p>                                      | <p>3. <u>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u></p> |
| <p><u>&lt;신 설&gt;</u></p>                                      | <p>4. <u>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정한다)</u></p>                                                            |
| <p><u>&lt;신 설&gt;</u></p>                                      | <p>③ <u>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
| <p>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p> <p>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p> | <p>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p> <p>① -----</p> <p>-----</p>                                                                                            |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  
득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  
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  
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  
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  
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  
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  
-----  
-----  
-----  
-----.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을 취득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  
일액) ① -----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  
-----이  
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  
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  
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

|                                                                                 |                                                                                                                                  |
|---------------------------------------------------------------------------------|----------------------------------------------------------------------------------------------------------------------------------|
| <p><u>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u></p> | <p><u>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u> &lt;단서 삭제&gt;</p> |
| <p><u>&lt;신 설&gt;</u></p>                                                       | <p>1.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u></p>                                                        |
| <p><u>&lt;신 설&gt;</u></p>                                                       | <p>2.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u></p>                                                                          |
| <p><u>&lt;신 설&gt;</u></p>                                                       | <p>3.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u></p>                                                                       |
| <p><u>&lt;신 설&gt;</u></p>                                                       | <p>4. <u>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u></p>                                 |
| <p>② ~ ⑤ (생략)</p>                                                               | <p>② ~ ⑤ (현행과 같음)</p>                                                                                                            |